대학원 화학공학과 입학전형 내규

1. 입학전형

본교 대학원 입학전형 학칙에 준하되,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학과 내규로 정한다.

1.1 (일반전형) 일반전형의 선발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병행한다. 서류심사는 ① 대학 및 대학원 성적, ② 학업 및 연구계획서(학과소정양식), ③ 출신 학교 평판으로 한다. 구술시험은 ① 전공에 대한 지식, ② 학문에 대한 열정과 성실성으로 시행한다.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을 총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하며, 각각의 배점은 소정양식으로 정리하여 매뉴얼화한다.

1.2 (특별전형) 특별전형의 선발도 일반전형에 준하되, 특별전형의 특성상 ① 경력증명서, ② 추천서(학과소정양식)의 제출을 추가한다.

대학원 화학공학과 종합시험 내규

제1조(적용범위) 본 규칙은 대학원 화학공학과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종합시험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.[추가]

제2조(응시자격) 각 과정 전공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상 취득한 재학생이나 연구등록을 필한 수료생은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
제3조(시험과목) 대학원 화학공학과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과목은 석사학위과정은 1과목, 박사학위과정은 2과목으로 한다.

제4조(응시절차)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화학공학과 사무실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제5조(시험위원) 학과주임교수는 본 대학원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전임교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하고 시험위원은 출제방향, 문항별배점, 평가기준 등을 학과주임교수와 협의하여 출제한다.

제6조(문제 유형 및 배점)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하며, 석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본지식과 능력을, 박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전체의 전문적 지식과 연구방법에 관한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며, 100점 만점으로 한다.

제7조(합격점수) 종합시험의 합격 인정 점수는 과목당 70점 이상으로 한다.

제8조(시험시기) 종합시험의 시행 시기는 매학기초 2주 안에 시행하되, 불가 피 한 경우 대학원 교수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.

제9조(시험결과 통지) 학과(부)주임교수는 종합시험 의 최종 결과를 매학기초 3주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험의 면제)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졸업요 건으로 하는 학생은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[추가]

제11조(보충규정)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[추가]